

주상하이한국문화원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14.4.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상하이한국문화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 후원명칭"이라 함은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주상하이한국문화원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상하이한국문화원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단체) 및 개인(이하 "사용 기관(단체) 및 개인"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순수 한국문화홍보 사업, 한중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 혹은 개인
5. 그 밖에 주상하이한국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원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용 기관(단체) 및 개인이 진행하는 행사의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의 기본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주상하이한국문화원 관련 행사
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주상하이한국문화원 관련 행사

주상하이한국문화원

4. 그 밖에 순수한국문화홍보 사업, 한중문화교류증진 등을 목적으로 개인 혹은 단체가하는 사업 혹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 ① 사용 기관(단체) 및 개인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아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②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주상하이문화원 해당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련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며, 원장이 최종 승인한다.

1. 행사가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
4.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
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업무 담당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평가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사용 기관(단체) 및 개인이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사용 기관(단체) 및 개인은 업무 담당부서에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주상하이한국문화원

2. 세부 행사내용
3. 행사참가자 인원
4. 행사결과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주상하이문화원은 사용 기관(단체) 및 개인이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사용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점검 등) 업무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기관(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